

## 특별해지사유신고서

※ [ ] 또는 ( )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가입자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	(전화번호 : )			
저축명	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	계약기간			
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					

###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

해지 근거법령	해당저축	사유 발생일	해지사유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2항	벤처투자조합 출자 등	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·지변 ( )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전문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*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 ( )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·회수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2항	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	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4조의2 제4항	투자자집합투자기구	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[ ]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0조 제8항	개인연금저축	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·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[ ]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제8항	연금저축		( )사망 ( )천재·지변 ( )퇴직 ( )해외이주 ( )사업장의 폐업 ( )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0조의3 제8항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	( )천재·지변 ( )해외이주 ( )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( )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 제7항	장기주택마련저축	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( )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
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 제7항	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( )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( )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 제12항	주택 청약종합저축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( )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( )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( )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의4 제5항	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취급기관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3조 제10항	세금우대종합저축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2조의13제5항	재형저축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 제8항	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  ( )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2 제9항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</p>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4 제15항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	<p>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 ( )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p>
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6제13항	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( )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7제9항	청년희망적금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 ( )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8제7항	청년도약계좌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( )가입자의 혼인, 출산(배우자의 출산 포함)
[ ]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38제12항	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	( )사망 ( )해외이주 ( )천재지변 ( )퇴직 ( )사업장의 폐업 ( )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( )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( )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

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**저축취급기관장**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망: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</li> <li>2. 해외이주: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</li> <li>3. 천재지변: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4. 퇴직: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5. 폐업: 폐업증명원</li> <li>6. 상해·질병: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·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7. 주택취득: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,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8. 그 밖의 사유: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**유의사항**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,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(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)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.